

공인인증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박지환 변호사

공인인증서는 왜 이렇게 많이 사용될까?

(1) 엄격한 온라인 본인확인 규제 + 전자서명법의 잘못된 만남

다양한 온라인 본인확인 규제 + 주민등록번호 목적 외 전용
강력한 부인방지효 + 전자서명의 본인확인 용도 전용

(2) 전자금융거래법령의 공인인증서 사용관련 규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폐지) + 금융회사에게 유리한 손해배상 규정

공인인증서는 왜 이렇게 많이 사용될까?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③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18조의2(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대안 논의

(1) 국가가 과연 계속 본인확인 방식에 사전 개입해야 하는가?

가. 전면 시장 자율화

나. 정부 및 공공기관 본인확인 방법에만 개입

다. 지금 그대로 계속 개입

대안 논의

(2) 전면 시장 자율화 방안

전자서명법 개정안 (19대 최재천 의원안 발의)

<현행 전자서명법상 '공인전자서명', '일반전자서명' 그리고 개정법안상 '전자서명' 비교>

	현행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인전자서명	일반전자서명	전자서명(개정안 제 2 조 제 2 호)
목적	·법에서 서명 등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자화할 때, 자필서명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적 수단을 제공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개정안 제 3 조)
효력	·전자서명법 제 3 조에 의해 서명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전자문서의 진본성·무결성을 보장, 부인방지 기능을 수행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서명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서명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개정안 제 3 조 제 1 항) ·전자문서의 진본성·무결성을 보장, 부인방지 기능을 수행(개정안 제 2 조 제 2 호 전자서명의 당연한 기능)
요건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특별한 요건 없음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개정안 제 2 조 제 2 호)
이용 범위	·법에서 서명 등을 요하는 문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본인확인(전자서명법 제 18 조의 2)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름	·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름(개정안 제 3 조) · 다른 법이 제한하거나 배제하지 않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본인확인 용도로 당연히 이용
발급 기관	·공인인증기관에 의해 발급	·일반인증기관에 의해 발급	· 미래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수행기준을 충족하는 인증기관이 발급(개정안, 제 4 조 제 1 항, 제 2 항)
발급 기관 요건	·법에서 정한 기술적·재정적 요건을 갖추고, 국가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음	·특별한 요건 없음	· 법에서 정한 기술적, 재정적 요건을 갖추고, 전문적, 독립적 제 3 자의 정기적 검증을 받아야 함. (개정안 제 4 조 제 4 항)

대안 논의

(2) 전면 시장 자율화 방안

UN 전자계약협약 비준

가. 전자계약협약 제9조는 당사자의 신원 및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이 사용되었고, 그 방법이 여러 정황에 비추어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명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
우리나라는 전자서명법 제3조에 공인전자서명의 경우 서명요건을 충족하고 진정 성립 등이 추정되나,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등 로서의 효력을 가질 뿐이라고 규정

나. 그러나 전자계약협약은 공인인증서명의 사용 뿐만 아니라, 서명방법이 여러 정황에 비추어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명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다 넓게 규정

따라서 전자계약협약의 비준을 위하여는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에 있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UNCITRAL 전자계약협약 비준 필요성 및 동 협약 비준시 국내법의 개정방향 연구, 왕상한 교수)

대안 논의

(3) 부분적 시장자유화 방안

가. 영국의 본인확인 제도 참조

- 공공영역에만 개입하되 서비스에 따라 본인확인 기술은 서비스 목적에 맞게 다양화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troducing-govuk-verify/introducing-govuk-verify>

나. 공인인증기관 신고제 (현행 허가제에서 완화)

대안 논의

